

학부 세부전공 배정에 관한 규정(3-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의 세부전공 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배정 운영위원회 구성) ① 각 학부는 전공배정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공배정 운영위원회는 해당 학부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부장으로 한다.

제3조(전공배정 운영위원회 기능) 전공배정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공배정 지도에 관한 사항
2. 전공배정 심사에 관한 사항
3. 전공별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전공배정 업무에 관련된 사항

제4조(전공배정 원칙) ① 전공배정은 학생의 희망에 의하되 학부별 전공배정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공배정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전공배정 시기) ① 전공배정 시기는 1학년 2학기인 한다.(개정 2002. 3. 1)

② 전공배정 지원 및 심사 시기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1. 3. 1)

제6조(학점이수) ① 세부전공이 확정된 학생은 해당전공 분야에서 지정한 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전공 이수학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7조(임의배정) 세부전공 배정 대상자로 소정 기일 내에 전공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전공배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의 1(세부전공배정 변경) 세부전공 배정자로 전공 변경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변경신청원을 학사관리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 3. 2)

제8조(복학자에 대한 조치) 입학당시 학과별 모집에 입학하고 복학 후 통합된 학부에 재학할 때에는 당초 입학한 전공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초 세부전공 지도교수 및 변경 세부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전공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98.3.2)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